

2

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

[발제 2]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김병일 교수는 ‘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’을 발표

□ 가상화폐(Virtual currency) 과세기준 정립의 필요성

- 핀테크(Fintech)로 대변되는 IT·금융 융합 트렌드와 기술 혁신,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반작용의 영향 등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장

| 가상화폐의 정의 및 특성 |

- ▶ (정의)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, 주요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·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“가치의 전자적 표시”로 정의
 - * 일반 화폐와 달리 개발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 결정, 실제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전제로 유통
- ▶ (특성) ① 익명성 ② 리스크(해킹 등) ③ 디플레이션(공급량 한계)
- ▶ (종류)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리플 등 '17.11. 기준 1,300여종

- 최근 전세계 공통 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가능성, 희소성을 가진 투자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등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

* 1비트코인 당 가격(국내 거래소 빗썸 기준): ('17.4.27.) 약 140만원 → ('17.11.22) 약 894만원

- 그러나, 국가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,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대두

-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

※ [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] 통화, 유가증권, 상품 등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‘복합적 상품(Hybrid product)’

□ 외국의 가상화폐 관련 과세제도 사례 검토

○ 미국, 영국, 호주,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,

- 가상화폐에 대한 ‘자산적 성격’을 인정하여 관련 소득 발생 시 소득세(법인세)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,
-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‘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’을 인정하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과세하는 경향

| 주요 국가별 가상화폐 관련 과세제도 |

구 분	소득발생 시 또는 거래발생 시			비고
	소득세·법인세	양도소득세 (자본이득세)	부가가치세 (소비세)	
미 국	○	○	× (통화로 간주)	
영 국	○	○	× (민간통화로 분류)	
호 주	○	○	× (판매세 부과하다, '17.7월부터 비과세)	
일 본	○	○	× (결제수단으로 취급)	
독 일	○	○	○ (물물교환으로 취급)	유럽사법법원 부가세 비과세 판결
싱가포르	○	-	○	자본이득세제 없음

□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 및 조세회피 방지방안

① (부가가치세)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또는 지급 수단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차이 발생 가능

* 재화인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나, 지급수단으로 볼 경우 비과세가 타당

- 국제적인 동향*을 감안하되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, 혼란이 없도록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

*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, 부가가치세의 경우 통화적 성격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하여 비과세하는 추세

Ⅰ 가상화폐 거래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방안(안) Ⅰ

거래유형	부가가치세 과세방안(안)
(1) 사업자 → 소비자 재화 공급 대가로 가상화폐를 제공받는 경우	▶ 지급수단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타당
(2) 사업자 → 사업자 재화·용역을 공급받고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경우	▶ 지급수단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타당
(3) 가상화폐와 현실의 통화(가상화폐) 간의 교환거래의 경우	▶ 채굴·매매·중개업자가 가상화폐를 매매하거나 법정통화 또는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여부는 정책적 판단 필요 - 신종 무형자산인 재화로 볼 경우 과세 가능 - 다만, 이 경우에도 해외에서 비과세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면세거래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

② (사업소득세·법인세)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 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가능

*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 별도 마련 필요

③ (상속·증여세)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상속·증여세 과세 가능

* 다만,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 보완 필요

④ (양도소득세)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

- 다만, 현행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며,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거래세를 부과*하는 방안 검토 필요

* 양도가액의 일정비율(증권거래세의 경우는 0.5%)로 부과하는 방안 등

⑤ (조세회피방지) 거래투명성 확보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,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,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 강화

- 국내 관계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,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 국가간 협력방안 적극 모색 필요